

17_1. 전세사기피해 지원 감면

§ 지특법36조4 취득세 200만원 공제

농특세 일반 적용

- 1)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_취득세 200만원 공제,
재산세 3년 경감- $60m^2$ 이하 50%, $60m^2$ 초과 25% 경감,
등록면허세 면제-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
- 2)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시_취득세 50% 경감

취득세 신고서	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(국토교통부장관)
취득세 감면신청서	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
매매계약서	